

고 양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【제 1147 호】

2015년 01월 20일 (화)

선 람	기 관 의 장

회 랑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

차 례

공 고

고양시 공고 제2015-78호	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	1
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5-1호	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공고	4

발행 : 고 양 시

편집 : 공보담당관

(우) 412-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(주교동 600) ☎ (031) 8075-2095

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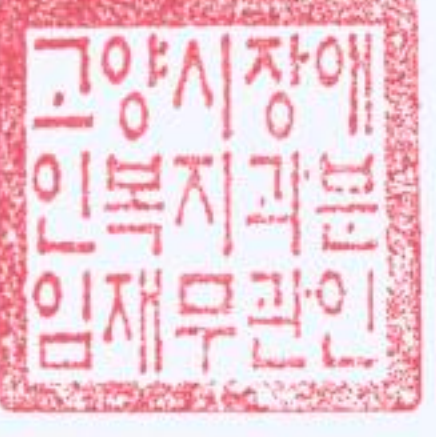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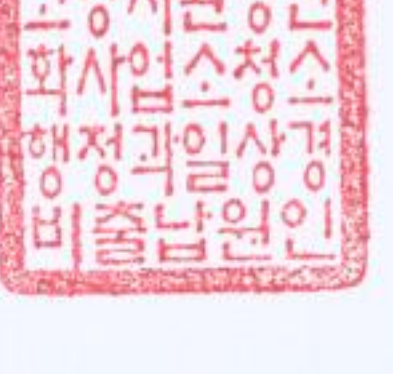
고양시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신조 등록 공인 및 폐기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. 1. 20

고 양 시 장

1. 등록 및 폐기 사유 : 조직개편
 - 기관의 신설, 분리, 통합된 경우
 -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
2. 최초사용일 및 폐기일 : 2015. 1. 20.
3. 등록 공인의 명칭 및 인영

공인명	규격(cm)	인 영	공인명	규격(cm)	인 영
고양시 예산법무과 분임재무관인	2.0×2.0		고양시 예산법무과 일상경비출납원인	1.8×1.8	
고양시 마이스산업과 분임재무관인	2.0×2.0		고양시 마이스산업과 일상경비출납원인	1.8×1.8	
고양시 첨단산업과 분임재무관인	2.0×2.0		고양시 첨단산업과 일상경비출납원인	1.8×1.8	

고양시 노인복지과 분임재무관인	2.0×2.0		고양시 노인복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	1.8×1.8	
고양시 장애인복지과 분임재무관인	2.0×2.0		고양시 장애인복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	1.8×1.8	
고양시 시민안전과 분임재무관인	2.0×2.0		고양시 시민안전과 일상경비출납원인	1.8×1.8	
고양시 건축과 분임재무관인	2.0×2.0		고양시 건축과 일상경비출납원인	1.8×1.8	
고양시 도시계획상임 기획단 분임재무관인	2.0×2.0		고양시 도시계획상임 기획단 일상경비출납원인	1.8×1.8	
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분임재무관인	2.0×2.0		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일상경비출납원인	1.8×1.8	
고양시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분임재무관인	2.0×2.0		고양시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일상경비출납원인	1.8×1.8	

4.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

고양시 노인장애인과 분임재무관인	2.0×2.0		고양시 노인장애인과 일상경비출납원인	1.8×1.8	
고양시 안전총괄과 분임재무관인	2.0×2.0		고양시 안전총괄과 일상경비출납원인	1.8×1.8	
고양시 마이스산업육성과 분임재무관인	2.0×2.0		고양시 마이스산업육성과 일상경비출납원인	1.8×1.8	
고양시 첨단지식산업과 분임재무관인	2.0×2.0		고양시 첨단지식산업과 일상경비출납원인	1.8×1.8	
고양시 청소과 분임재무관인	2.0×2.0		고양시 청소과 일상경비출납원인	1.8×1.8	

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공고

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원에 오수관로가 신설됨에 따라
공고일로부터 『하수도법』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
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및 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.

2015년 1월 20일

고 양 시 장

1. 금회 하수처리구역의 사용개시 하는 공공하수도 내용

가.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원

- ① 하수관거 위치 : 덕양구 강매동 일원
- ② 하수관거 신설 : 오수관로 L=2,996m, D=200mm
압송관로 L=924m, D=100mm
소규모펌프장(맨홀펌프장) 1개소
- ③ 하수처리구역 : 난지처리구역(매화정 처리분구 : $A=0.123\text{km}^2$)

2. 하수처리 구역

(단위 : km²)

구 분	하 수 처 리 구 역			비 고
	계	기 공고	금회 공고	
고 양 시 하수처리구역	59.694	59.571	0.123	

3. 관련도면의 공람 및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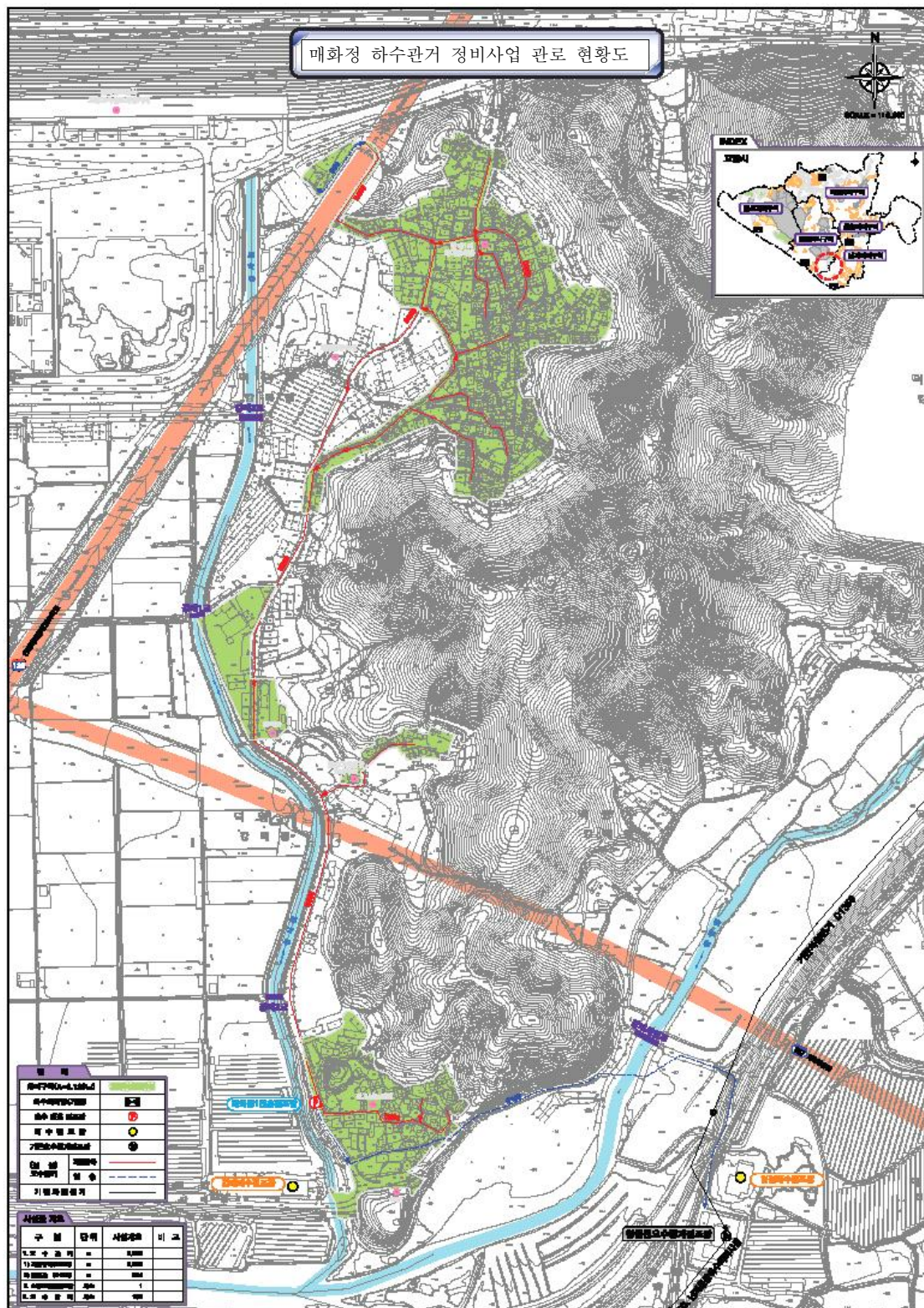
-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공람장소 : 고양시 하수행정과
- 공람내용 : 하수관로현황도, 하수처리구역도

4. 기 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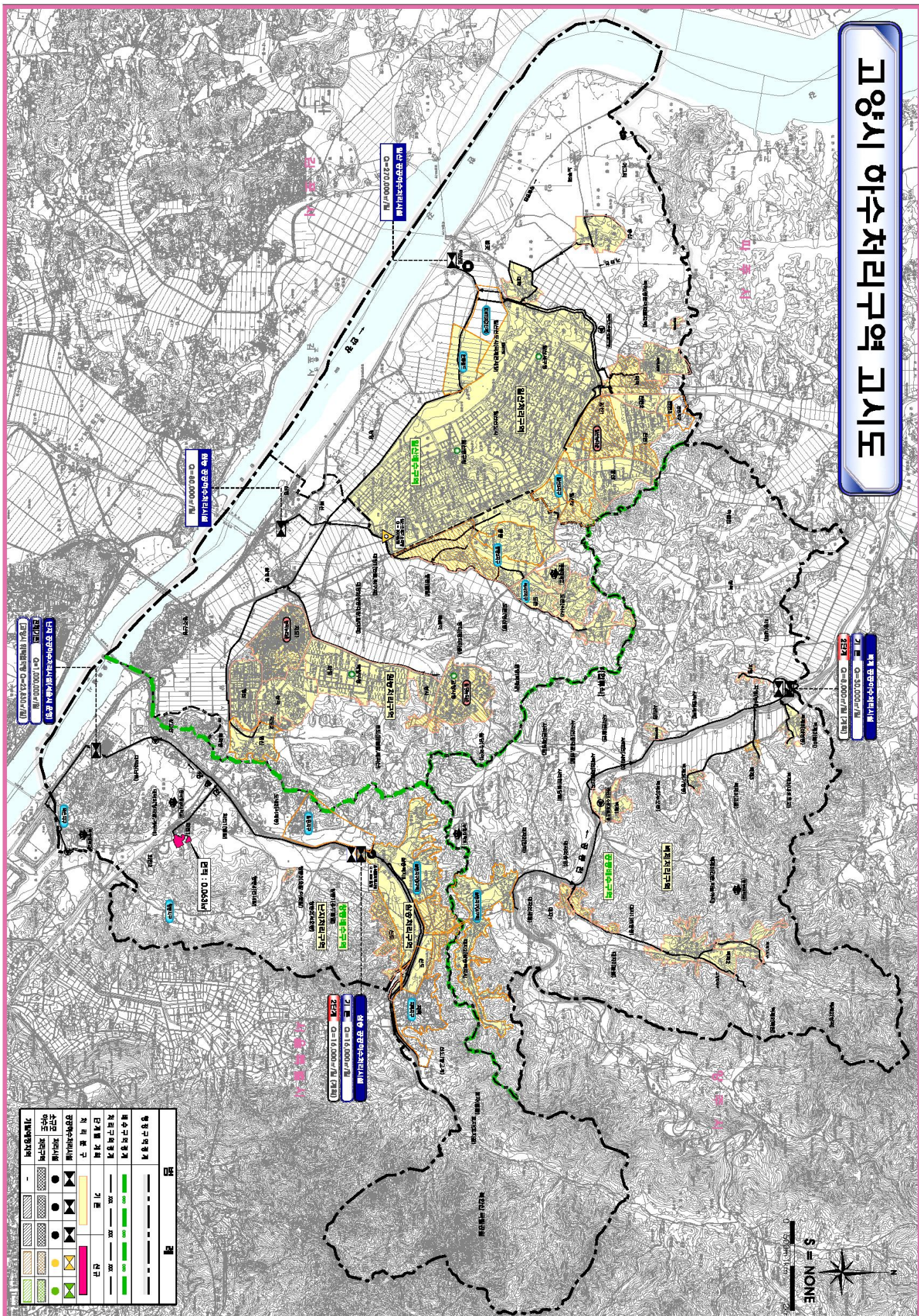
-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관련 인·허가 등의 절차는 하수도법 및 우리시 하수도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함.
- 하수처리구역 내 합류식 관거로서 그 배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가동 중인 오수처리시설을 정화조로 대체 권고 할 수 있음.
- 하수처리구역 내 분류식 관거로서 그 배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가동 중인 오수처리시설, 정화조를 폐쇄조치 권고할 수 있음.
- 하수처리구역내 오수발생(신축, 증축, 용도변경)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
5.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하수과 하수행정팀(031-8075-456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- 하수관로 현황도, 하수처리구역도



고양시 하수처리구역 고시도

[illegible]